

## 배출허용기준 적용

**Q** 하수처리구역내의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처리후 최종방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있어 “나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성수기 작업 물량이 많은 폐수량이 증가되어 최종방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경우 하수도가 넘칠 우려가 있는 바, 성수기 작업시는 폐수를 처리후 최종방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하수처리구역으로 사용 공고된 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9 제2호 비고1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량규제 사업장 신고에 관하여

**Q** 2005년 1월에 발표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14조 3항과 시행규칙 10조를 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해진 3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면 8조내지 21조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종사업장의 총량규제 사업장신고는 2007. 7. 1일까지라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2007. 7. 1에 대기관리권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2007. 9. 30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4조 내지 제22조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반 사항을 2007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석재가공시 나오는 폐석재를 레미콘 원료로 가능?

**Q** 당사는 골재를 분쇄하여 레미콘골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인근 석재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석이 많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입고하여 원석과 함께 분쇄, 선별하여 레미콘골재를 생산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을 갖추어 재활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는 공산품표시인증으로서 골재는 이에 해당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석이라고 하지만 원석을 판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투리 돌로서 모양만 다를뿐 모든게 똑같습니다.

질의1. 폐석재 재활용방법은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46조 3항 규정에의한 재활용만이 가능한것인지요?

질의 2. 폐석재의 레미콘골재로서의 재활용이 불가 하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요?

**A**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단순 분쇄하는 것은 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가능?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하·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장 유기성오니를 위탁처리(재활용)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은 폐수처리오니(식품오니, 도축장오니, 제지오니, 제약오니), 음식물폐기물, 소각재, 동물성잔재물로 되어있는데 하·폐수처리장 유기성오니도 처리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대상품목에 하수처리오니가 처리대상품목으로 관할인 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하수처리오니를 중간처리할 수 없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당사는 스텐을 용융 압출하여 스텐관을 제조하는 업체로 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스텐용융 압출후 물을 사용하여 냉각하여야 하나 농지전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시설에 해당되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물에 수용성 절삭유를 유분함량 5%이상으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분함량이 5%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에 폐수라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 물에 수용성 절삭유를 섞어 유분함량이 5% 이상이라도 시행규칙 제6조 별표4(배출시설)에서 정한 일정량(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일 최대발생량이 0.01m<sup>3</sup> 이상)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TMS 대상 여부



질의 1. 플라스틱 알갱이(acrylic, 20 ~ 30mesh)를 고압 분사하여 금속재 표면(주로 AL제품)의 페인트를 제거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탈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용량은 10HP이상임)? 탈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탈청시설??)?

질의 2. 탈사시설의 TMS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연속식의 기준은 설비구조가 탈사처리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일일 8시간의 판단은 대기배출시설인·허가 사항의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허가 사항에 등재된 가동시간이라 함은 허가증 표지의 (7)항인 일일 조업시간인지(사업장 평균가동시간), 아니면 개별 배출시설로서의 탈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가동시간인지 여부?

〈당사 현황〉

\*허가증에 기재된 (7)항의 일일 조업시간 : 18시간

\*탈사시설의 일 평균 가동시간 : 5~6시간

-시간적산용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자가 노즐을 잡고 스위치를 ON할때부터 OFF할때까지의 시간이 분단위로 적산됨.

\*작업방법 :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작업자가 작업대상 물체 표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분사노즐(GUN)을 잡고 페인트의 제거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작업함.

질의 3. 상기 시설의 탈사시설 해당여부와 TMS부착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금속재의 표면을 플라스틱 Ball 등으로 고압분사하여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시설이라면 탈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속식 탈사시설이라 함은 탈사처리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조로서 일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일일 8시간”의 기준은 개별 배출시설의 일일 가동시간을 의미하며,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은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량산정방법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SCRUBBER)에서 순환수가 사용되는데 1) 순환탱크 용량은 1톤, 순환펌프 0.16톤/분당, 폐수배출은 0.1톤/일,

2) 세정시설은 (분무량 72톤/시간당)의 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이때, 폐수 배출량은 얼마인가요?

가) 일일 최대배출량 0.1톤 인지?

나) 분무량 72톤/시간당 인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위한 폐수배출량은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용수사용량은 수도물 · 공업용수 · 지하수 · 하천수 및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

든 물을 포함하되,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되므로 배출량은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날을 기준(최대폐수배출은 0.1톤/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하여



당 현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순환골재를 재활용(성토용, 뒷채움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에 따르면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의 10%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고시되었습니다.[환경부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호]

당 현장에서 발생된 순환골재를 성토용 및 뒷채움용으로 재활용 하였다면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고시된 보조기층용 골재의 10% 이상의 양에도 포함이 되는지요?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현장에서 성토용 및 뒷채움용으로 사용한 순환골재의 양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도로보조기층용 10% 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장시설의 종별변경



기존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배출시설에 연계된 방지시설을 먼지 및 총탄화수소의 처리효율이 우수한 시설로 변경 ·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시 이론발생량을 계산하여 종별을 신고하였고 현재 대기3종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금번 변경신고시 자가측정을 한 결과를 이용한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종별재산정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설치신고시 자가측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론발생량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측에 의한 방법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실 줄압니다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 발생량은 우선적으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계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인·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페페인트캔 처리관련 법령개정관계



페 페인트캔이 지정폐기물에서 일부 제외된다는 공고가 났는데 일부 제외가 된다는 함은 바로 고철로 팔아도 된다는건지 아님 일반폐기물로 바뀐다는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페페인트 용기의 처리가 곤란하니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업자단체 및 업계의 건의가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부에서는 그 간 용역사업을 통해 현지실태조사 및 폐기

물전문가들에 의한 유해성 여부와 완화 후의 악용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페페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페인트가 건조되지 않아 흘러내릴 수 있는 상태의 것에 한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 5톤 미만의 폐기물



건물의 철거나 리모델링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페슬레이트, 폐석고보드, 폐타일, 폐목재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해야 하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5톤 이상일 경우 각각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들인데 5톤미만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청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